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파면된 정권 인사의 군 주요직위 임명권 박탈〉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5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0.
3. 회부연월일 : 2025.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모총장·중요 부서의 장 등의 임명 및 임명제청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국방부장관 등이 참모총장·중요 부서의 장 등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중요 부서의 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및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임명추천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9조의2(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추천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u><신 설></u>	제20조의2(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방부장

현행	개정안
	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대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경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함) 제71조¹⁾에 따라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²⁾.

1)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 각군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 및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³⁾로써,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군 참모총장 및 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권자가 되며, 파면된 정권의 국방부장관은 해당 직위에 대한 임명 추천권 또는 제청권을 가지게 됨.

□ 이에 개정안은 탄핵된 정권의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간접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는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하여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⁴⁾하므로, 정당성이 결여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참모총장의 임기가 2년⁵⁾임을 고려할 때, 탄핵된 정권의 인사가 차

3)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4)

2024헌나8(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중 일부 발췌·정리

대통령은 군정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함.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됨.

5)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

기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군인사법」은 군인의 신분, 복무,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⁶⁾로서, 대통령권한대행과 같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인사권 제한을 동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할 수 있어 보임.

□ 둘째, 국방부장관의 임명제청권 및 임명추천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3조⁷⁾와의 법 체계상 정합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임.

□ 셋째, 국방부장관의 인사권만을 제한할 경우 타 장관의 인사권과 비교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동일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장관이 제청하는 임명직공무원인 경찰청장⁸⁾, 검찰총장⁹⁾ 등과 비교할 때, 국방부장관만의 임명제청권 및 임명추천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타 부처 공무원 임명 절차와 비교하여 국방부장관만의

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9)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인사권을 제약하는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중요 부서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임명추천권을 제한할 경우 군 주요 직위의 공석상태를 장기화시킴으로서 군 조직의 불안정 초래, 주요 의사결정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안보 대비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